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 제3자 유상 제공시 고지 의무화〉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95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개인정보 제3자 유상 제공시 고지 의무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30.
3. 회 부 일 : 2024.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험상담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의 유상판매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하였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인정보 제3자 유상 제공시 고지 의무화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¹⁾가 정보주체²⁾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에,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18조 제3항).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유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유상제공 사실과 지급한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안 제20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제공할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다른 동의 사항과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7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생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②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② ----- ----- ----- ----- ----- ----- 1. ~ 5. (현행과 같음) <u>6.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u>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5. (현행과 같음) <u>6.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u>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 ----- ----- -----

현행	개정안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u>출처</u> 2. 3. (생략) ② ~ ④ (생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6. (생략)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u>위하여</u>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생략) ② ~ ⑦ (생략)	----- -----. 1. -----<u>출처</u>(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내용을 포함한다) 2.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위하여</u> 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8.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동의를 받을 때에는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③ 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수집 출처 등⁴⁾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제20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목적외 제3자 제공 등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법 제22조 제1항).

○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외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제64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71조), 법 제22조에 따른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5조제4항제3호).

□ 그런데 지난 2022년 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험 상담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의 유상판매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논란 발생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해당 회사는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유상제공 사실은 필수적인 고지 항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입자 82만명의 개인정보를 건당 69,000원에 법인보험대리점(GA)과 개인보험설

계사에게 팔아 총 292억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⁵⁾

< 토스의 개인신용정보 유상 제공 내역 >

(단위: 건, 원)

대상 연도	법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설계사	
	건수	매출	건수	매출
2018	50,922	1,377,458,500	0	0
2019	133,502	6,194,425,000	0	0
2020	389,670	13,648,309,681	0	0
2021	214,839	6,874,848,909	0	0
2022	35,923	934,241,500	24,645	217,545,102
합계	824,856	29,029,283,590	24,645	217,545,102
총 합계	건수	849,501		
	매출	29,246,828,692		

자료: 황운하 의원실(언론기사에서 재인용)

-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상 제공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알권리 등을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즉,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⁶⁾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음.

5)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사업자)로 해당 사안은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이나, 향후 유사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발생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같은 이슈가 논의될 수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6)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

□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제3자 유상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정보주체가 유상 제공 사실 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다른 동의 사항과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알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⁷⁾

○ 또한, 이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시 개인정보 이용 목적 등의 사항을 고지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의 시 고지 사항을 추가하거나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유상 제공”의 개념을 이 법에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데, 유상 제공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상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데이터 가공, 분석 및 전송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여 해당 비용을 제3자에게 징수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의 유상 제공으로 보아 별도로 고지하도록

7)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에서 신용정보회사등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타인과의 거래로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2202394호)이 발의되었음.

하는 것은 동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바,
유상 제공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른 “유상 제공”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 등을 위한 정보 제공(목적 내 제공)과 실비 보전⁸⁾ 등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유상제공(제18조)에 한해서만 유상 제공 사실 등을 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임.

□ 다만, 안 제20조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유상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20조에 대해서도 유상 제공 사실 등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4

8) 개인정보 제공이 수반되는 제휴 및 중개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가명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명처리비용 보전 등